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60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설재영 의원

찬 성 자 : 조규식, 정현서, 최지연, 홍성영,  
최병순, 정인화, 신혜영, 정홍근,  
신진미, 서다운, 강정수(11인)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서 각종 범죄 피해사례를 반영한 조사 항목 확대(안 제6조제1항)

나.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7조제1항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 필요

다. 소관부서 :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6. 3. 11. ~ 3. 16. / 5일간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를 “활동현황, 경영실태 및 각종 범죄 피해사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u>활동현황 및 경영실태</u>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실태조사) ① ----- ----- ----- ----- <u>활동현황, 경영실태 및 각종 범죄 피해사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